기회발전특구 R&D 지원내용

○ **(지원목적)** 기업의 사업활동(사업장 구축, 인력 유치 등)이 지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상용화 및 시장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방 이전·신증설 등에 따른 초기 투자한계 극복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착공 이후) 기업 (참고 : 착공→준공→완공 등)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MOU, LOI 등)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기회발전특구 개요 참고)

○ **(산업분야)** (1순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 (2순위)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산업분야(붙임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산업분야 참조)

* 1순위를 우선으로 하되 공모상황 등을 고려하여 2순위까지 허용

○ **(지원방식)** 자유공모 (기회발전특구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 과제당 7억원/년(1차년도 5억원, 최대3년) / 지원규모, 기간, 연구내용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사업화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R&D지원

- **(사업화지원)** 투자기업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위해 실증, 상용화 등 R&D지원
- **(연구시설구축)**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공동활용장비, 기반구축장비·시설은 제외)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사업화 R&D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공기관 또는 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공정에 적용 및 고도화
	기술 Scale-up 및 공정개발	개발 초기 단계 기술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 공정 최적화, 생산체계 구축 등 지원
	첨단기술확보R&D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공정에 적용 및 고도화할수 있는 기술이전R&D 지원
	규제해결R&D	특구내 기업의 사업화에 따른 규제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험·인증 및 R&D실증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가능성 확보
	민간자금 매칭 사업화R&D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금을 매칭으로 R&D사업화 성과 제고 및 신사업 개발 촉진
연구시설 구축	소규모 연구시설·설비조성 지원	소재 합성, 부품 조립, 공정 실험 등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시설·설비 조성
	연구장비 도입 지원	기업의 기술개발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분석·제작 장비를 신규 도입지원
	파일럿 테스트 및 실증설비 구축	시제품 수준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규모 테스트베드 및 실제 사용 환경에 기반한 실증설비 구축 지원

참고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6.2월 기준)

참고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 (특구투자기업 산업분야)

권역명	지역명	특화산업
중부권	충청남도	바이오 의약품, 방산, 석유화학, 수소, 식품 이차전지 설비 등
	충청북도	반도체, 식품,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소재
	대전광역시	바이오, 방산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 의약품, 자동차 부품
서남권	광주광역시	AI, 데이터, 자동차 부품
	전라남도	LNG터미널, 수소생산·발전,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 이차전지 소재, 해상풍력 터빈
동남권	부산광역시	디지털 금융,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친환경자동차 부품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경상남도	관광, 문화, 나노융합산업, 모빌리티 부품 등 수소, 모빌리티, 이차전지 소재, 해양플랜트
대경권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래차, 로봇, 이차전지, 모터
	경상북도	반도체·이차전지, ·방산,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강원도		광물, 배터리 모듈, 수소, 의약품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탄소소재, 특장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주특별자치도		우주항공

※ 특화산업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산업분야이며, 투자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능

참고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라 개인·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 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 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